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19가단514698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1. B

2. C

3. D

4. E

피고 2, 3,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김유진

변론 종결2020. 9. 22.

판결 선고2021. 1. 2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 E은 위 가.항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금원 중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19. 5.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8. 2.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C, D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E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 C, D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피고 E에 대하여]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피고 C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E 사이에 2018. 12. 31.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은 피고 C에게 2018. 12. 3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138503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채권

1) 피고 B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2015. 4. 29.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 E은 피고 B가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F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¹⁾. 이후 위 대리점계약은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2019. 5. 31.까지로 연장되었다.

2) 원고와 피고 B, C은 2017. 5. 29. 위 대리점계약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1억 5,000만 원, 보험기간 2017. 6. 1.~2019. 5. 31.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3) 그 후 2019. 3.경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피보험자인 F는 2019. 3. 13.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4. 19. F에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나. 피고 C과 피고 E의 이혼 및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1) 피고 E은 2017. 12. 29. 배우자였던 피고 C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7드단79299). 2018. 8. 30.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재산분할로 피고 E이 공동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1/2 지분을 피고 C에게 이전하고, 피고 C이 쌍둥이 자녀들(2011. 9.생)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갖되 피고 E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하 '제1차 조정'이라 한다).

■ 제1차 조정(을 제1호증)

1. 피고 E과 피고 C은 이혼한다.

2. 피고 E과 피고 C간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1) 피고 E은 2019. 6.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E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18. 8. 30.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피고 E,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5. 12. 4. 접수 제173918호로 마친 채무자 피고 E, 채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2억 4,9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상의 채무자를 피고 C으로 변경하는 절차에 상호 협조한다.

나. 위 가.항을 제외하고는 피고 E, C이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부동산, 채권, 금융자산 혹은 유체동산 등은 모두 각자가 확정적으로 보유하기로 한다.

3. 사건본인들(쌍둥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C을 지정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E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4. 피고 E은 사건본인들을 아래와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고 C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이하 생략)

5. 피고 E과 피고 C은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2) 그런데 위 조정 내용과는 달리 2018. 12. 31.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C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같은 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지분을 '이 사건 지분', 위 등기원인을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 당시 피고 C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지분은 피고 C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3) 피고 E은 2019. 6. 20. 피고 C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2232). 2019. 9. 2.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 E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이 사건 지분 이전이 쌍둥이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 명목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는 것이다(이하 '제2차 조정'이라 한다).

■ 제2차 조정(을 제2호증)

1. 사건본인들(쌍둥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 C에서 피고 E으로 변경한다.

2. 피고 C은 피고 E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으로 양육비 지급을 갈음하기로 한다.

3. 피고 E은 피고 C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 지급 명목으로 2018. 12. 31.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음을 확인한다.

4. 피고 E, C은 제2, 3항의 조정조항이 향후 피고 E이 피고 C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합의된 조항임을 확인한다.

[인정근거]

○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C, D,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대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① 피고 B,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공동하여 2)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②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D, E은 피고 B, C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자신들의 부담부분인 각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 1/3) 및 이에 대하여 각 원고의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9. 4. 20.부터 그로부터 30일이 되는 2019. 5. 1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9. 8.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E)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피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이 이 사건 지분을 피고 E에게 이전함으로써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E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차 조정은 피고 C이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임에도, 그로부터 불과 넉 달 후에 반대로 피고 C이 피고 E에게 자신의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하는 재산분할약정을 한 점,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피고 C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이 사건 지분이 그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한 쌍방의 재산, 쌍방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에 관한 주장, 증명이 필요한데,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관한 위와 같은 청산적 요소에 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없는 점, ② 제1차 조정에서 피고 E이 자신의 지분을 피고 C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은 당시 만 6세에 불과했던 쌍둥이 자녀를 피고 C이 양육하기로 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후 피고 E과 피고 C 사이에 양육자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제2차 조정을 통해 양육권자를 피고 E으로 변경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피고 C의 이 사건 지분이전이 장래 양육비 지급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피고 E은 대신 장래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기도 한 점(재산분할의 상당성 판단에 청산적 요소 외에 부양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약 3억 원 정도인데, 이미 채권최고액 2억 4,960만 원의 금융기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지분의 시가 전액을 피고 C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피고 C과 피고 E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시기, 경위, 경과, 내용 및 피고 C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직후인 2019. 1. 9.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과 피고 E이 재산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가장 이혼을 했다거나, 이혼 이후 통모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선 사정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정기

별지

- 1) 실제로는 피고 B와 피고 C이 공동으로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 2) 피고 B, C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관계에 있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동하여'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다.
- 3) 피고 B, C의 F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원고, 피고 D, E은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고, 공동보증인 사이의 부담부분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동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D, E에게 각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의무가 발생한다.